

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(제12조제2항 관련)

구 분	지정요건
1. 사업장 규모	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하며,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시·도를 모두 포함한다) 내의 농산물 직거래 수요에 적합한 매장규모를 갖출 것
2. 시설	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. 판매시설 나. 소포장시설 다. 품질관리실 라. 하역시설 마. 주차시설
3. 인력	농산물 직매장,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. 이 경우 기관·법인·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농산물 직매장,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2년 이상 관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.

비고: 제1호의 사업장 규모는 농산물 직거래 수요를 고려하여 시·도별로 적합한 매장규모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